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.

발 의 자 : 박충권 · 박준태 · 서천호  
이종욱 · 김위상 · 김성원  
김기웅 · 유상범 · 김 건  
이달희 · 김상훈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별정우체국을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승계한 사람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주고,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며, 주민세 사업소분 중 연면적에 따른 사업소분(기본세율을 적용한 사업소분은 제외됨)을 면제하여 주고 있음.

그런데 별정우체국의 지정·승계를 받기 위하여는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야 지정이나 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 별정우체국 지정·승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또한,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와

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에 대하여도 면제가 필요함.

이에 별정우체국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별정우체국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별정우체국 지정·승계를 신청한 사람도 포함하되, 신청 후 지정·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,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 및 제2항).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받은”을 “받거나 지정을 신청한”으로, “승계한”을 “승계하였거나 승계를 신청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포함한다)를”을 “포함한다)와 지역자원시설세를”로, “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”을 “사업소분”으로 한다.

4. 별정우체국의 지정·승계를 신청한 후 지정·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





③ (생 략)

③ (현행과 같음)